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 규정(안)

제 1 조 (설치) 수도권의 집중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장단기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수도권대책 실무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 2 조 (기능) 기획단은 다음의 사항을 연구한다.

1. 기존 수도권정비관련시책의 평가와 투자실적 및 계획의 분석
2.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수도권대책의 연구
3. 산업과 교육분야에서의 인구집중억제대책의 연구
4. 수도권의 교통, 주거, 환경에 관한 정책방향 연구
5. 수도권집중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6. 기타 수도권인구집중 방지에 관련된 정부시책의 연구

제 3 조 (구성)

1) 기획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 및 6인 이내의 실무작업 반장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2조정관과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3) 실무작업반장은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국가 공무원중에서 파견된 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 4 조 (단장의 직무)

1) 단장은 기획단을 통괄한다.

2)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실무작업반) 기획단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총괄, 산업, 교육, 사회, 주거, 환경, 교통, 행정관리 등의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제 6 조 (조사요원)

1) 실무작업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21인 이내의 조사요원을 두되, 조사요원은 관계행정기관소속 4급 국가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자로 한다.

2) 단장은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요원과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을 파견 받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 7 조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기획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여론의 수집) 기획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 9 조 (조사, 연구의 의뢰)

1)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람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수당 등) 기획단의 소속공무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의 존속기간)** 기획단은 199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